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0.1조 일반 규정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리고, 양 당사국 간 전자상거래 증진,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관한 양 당사국 간 협력 제고 및 세계적으로 보다 폭넓은 전자상거래의 사용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10.2조 관세

1.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 하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협정에 합치되게,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전자적으로 전송된 내용물에 대하여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 전자인증, 전자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

1. 각 당사국은 전자인증을 위한 다음의 법령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을 상호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전자거래가 전자인증에 대한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허용하는 법령, 그리고
 - 다. 인증 기술 및 실행 모델의 인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법령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당사국이 국제적으로 수용된 기준에 근거하여 발행하거나 인정한 디지털 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양 당사국은 업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인증서의 상호 운용성을 장려한다.

제10.4조 국내 규제에 틀

각 당사국은 「199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5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소비자를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자국의 관련 국내 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그 밖의 형태의 상거래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한다.¹

제10.6조 개인정보 보호

1. 각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입법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자상거래상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개발에 있어, 각 당사국은 국제 표준 및 관련 국제 기구의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이전되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의 안전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제10.7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²
3.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종이 없는 무역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0.8조 전자상거래에 관한 협력

¹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이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또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는 날 전에는, 이 항을 적용할 의무를 지니지 아니한다.

² 베트남의 경우, 이 의무는 가능한 경우 각 분야에 대한 자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연구 및 훈련 활동을 포함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유지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
- 나. 개인정보 및 온라인 소비자의 보호와 사기 사건의 신속한 조사 및 해결 촉진 등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의 보안
- 다. 어느 한쪽 당사국이 사용하는 무역행정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도록 장려
- 라. 전자상거래의 법적 틀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 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모색, 그리고
- 마. 전자상거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

2. 양 당사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국경을 넘어 이전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 권한 있는 당국과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제10.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 인증서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참가자에 대한 신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행되거나 또는 이를 위하여 그 참가자와 달리 관련된 전자 문서 또는 파일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데이터 메시지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데이터 메시지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그 데이터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